

□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액

「등기부 등·초본 등 수수료 규칙, 대법원규칙 2317호」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

등 기 의 목 적		수수료	비 고
1. 소유권보존등기		14,000원	
2. 소유권이전등기		14,000원	
3.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		14,000원	
4.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		14,000원	
5. 변경 및 경정등기 (다만, 착오 또는 유 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 은 수수료 없음)	가. 등기명의인 표시	3,000원	행정구역·지번변경, 주 민등록번호경정 등의 경 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
	나. 각종권리	3,000원	
	다. 토지표시	없 음	
	라. 건물표시	3,000원	행정구역·지번·면적 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 료 없음
6. 분할·합병등기	가. 토지	없 음	
	나. 건물(구분등기 등)	3,000원	
7. 건물의 멸실등기		3,000원	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 에는 신청수수료 없음
8. 예고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등기		없 음	
9. 말소등기		3,000원	
10. 말소회복등기		3,000원	
11. 멸실회복등기		없 음	
12. 가압류·가처분등기		3,000원	
13. 압류 (체납처분 등 등기)	가. 지방세	3,000원	
	나. 의료보험 등 공과금	3,000원	
14. 경매기입등기, 강제관리등기		3,000원	
15. 회생,파산,개인회생,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 탁으로 인한 등기		없 음	
16. 신탁등기	가. 신탁등기	없 음	
	나. 신탁등기의 변경, 말소등 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	없 음	
17. 환매권등기	가.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 권의 이전등기	14,000원	
	나. 환매권 변경, 말소 등 환 매권 관련 기타 등기	3,000원	
18.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		3,000원	

□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(수수료규칙 제5조의5)
전자신청에 의한 부동산 등기신청의 경우에 14,000원은 6,000원으로, 3,000원은
1,000원으로 하며,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인 경우에는 14,000원은 10,000원으로,
3,000원은 2,000원으로 함